

2023년도 제2회 공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2회 공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공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3명

근무예정 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주요 업무
경 제 과	노사민정 협 의 회 담 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협의회 운영·관리 ■ 노동정책사업 발굴 및 노사민정 관련 공모사업 추진 ■ 일자리위원회 운영, 일자리육성 등 일자리사업 전반 ■ 노사협력 자체 사업 추진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전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다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사업 및 정부지원 공모 추진 ■ 도시재생사업 관련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사업 추진 ■ 주민참여 사업제안의 사전검토 및 사업발굴
	도시재생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사업 관련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지원 ■ 주민참여 사업제안의 사전검토 및 사업발굴 지원

2.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상당)	69,349	46,209	주35시간 환산
	다급 (7급상당)	56,679	40,255	
	라급 (8급상당)	49,723	35,469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임용(계약) 기간

2년 (사업수행 기간,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노사민정 협 의 회 담 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상당)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p>※ 관련학위 : 법학, 사회학, 지역사회학, 노사관계학, 경영학, 노동경제학, 고용노동학, 노동복지정책학, 행정학, 정책학, 정책복지학 등</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법인·단체에서 노사·고용업무 등 근무경력</p>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도시재생 (다급·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p>※ 관련학위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주거환경학, 부동산학, 토목공학, 지역건설공학, 건축공학, 조경학, 산업디자인학, 공간디자인학, 문화관광학, 경제학, 지역사회과학 등</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도시재생 분야 근무 경력 - 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건축 및 조경분야(건축학, 조경학 등), 경관 및 디자인분야, 사회적 경제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 근무경력</p>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3. 8.(수) ~ 3. 10.(금)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3. 3. 10.) 도착분까지 유효함
-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소)」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 22.(수)	3. 8.(수) ~ 3. 10.(금)	서류전형	-	-	3. 17.(금)
		면접시험	별도	별도	별도

- ※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 게재
-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직무수행 60점, 관련분야 실무경력 40점, 가산점 등을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5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3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선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채용 적격자로 선발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공주시 수입증지 /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공주시청 1층 민원토지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⑪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요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총괄 문의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41-840-2069)으로, 업무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용 분 야	부 서 명	연 락 처	비 고
노사민정협의회담당	경 제 과	041-840-8293	
도시재생(다급·라급)	도 시 재 생 과	041-840-8683	